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39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권성동 • 김상훈

강선영 • 한기호 • 윤영석

서천호 · 김태호 · 김승수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,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.

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. 또한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도 군사기밀의 탐지·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, 법정형이 낮거나 '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'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 미국, 독일,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'외국'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

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4항제1호 중 "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"를 "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"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람도"를 "사람은"으로, "처한다"를 "처하고, 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3항의 형에 처한다"로 한다.

- 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④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제3항의 형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적용대상자) ① ~ ③ (생	제1조(적용대상자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	
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	
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	,
1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	1.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
	의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간첩) ①・② (생 략)	제13조(간첩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♥</u>)
<u><신 설></u>	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
	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
	역에 처하고, 외국의 간첩을 방
	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
	<u>징역에 처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
	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
	을 초래한 사람도 제3항의 형
	<u>에 처한다.</u>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>⑤</u>
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	
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	

<u>사람도</u> 제1항의 형에 <u>처한다</u>.

사람은----- 처하고, 제 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사 람은 제3항의 형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